



#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

최창희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한성원 연구원

연구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 완화, 위자료 상향 조정 등 제조물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보험회사들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 개발해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이 PL보험<sup>1)</sup>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여 피해자들이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음.

● 2016년 11월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세퓨에게 5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나 동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파산하여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sup>2)</sup>

■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되었음.<sup>3)</sup>

-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의 3~12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수배상임.
- 입증책임 완화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원고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해 주어 소송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임.<sup>4)</sup>

1) 제조물 관련 손해배상책임(PL)을 보상하는 보험을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이라 함.

2) 조선일보(2016. 11. 16), “소송 이기고도 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참조.

3) 백재현(2016. 5. 30), 김관영(2016. 6. 8), 최명길(2016. 6. 29), 오제세(2016. 7. 1), 조정식(2016. 7. 21), 한정애(2016. 7. 21), 서영교(2016. 8. 5) 등이 대표 발의;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참조.

4) 예를 들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15)은 피해자가 1. 해당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을 보인 경우

- 대법원은 올해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가중된 위자료<sup>5)</sup>를 부과하는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sup>6)</sup>을 발표하였음.
  - 제조물 사고와 같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사망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영리적 불법행위에 가중사유<sup>7)</sup>가 있을 시 6억 원을 가중(총 9억 원 부과)

#### ■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손해배상책임 강화는 경제주체들의 수익 변동성을 증가시켜 리스크 관리 동기를 부여하고 관련 보험 수요를 증가시킴.
  - 일본 법원은 2005년 이후 자전거 사고에 대해 높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했는데 2008년 이후 5년 간 연간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가 25% 감소하였고 관련 보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음.<sup>8)</sup>
  - 손해배상책임이 강한 미국의 2012년 1인당 연간 민사 손해배상액은 한국의 32.3배이고, 1인당 연간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한국의 35.8배 수준임.<sup>9)</sup>
- 따라서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따라 PL보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보험회사들은 제조물 손해배상책임 강화에 부합하는 PL보험상품을 개발해 시장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PL보험 약관에 통상의 손해를 초과하는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기본담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일반 제조물 사고<sup>10)</sup>를 보상하는 PL보험의 경우 배상금액 상향에 따라 요율을 조정해 동일한 상품을 활용할 수 있음.
- 만일 PL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보험회사들은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 중 피고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의 손해배상 발생을 인정하는 입증책임 완화를 제안했음.

- 5) 이하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불법행위에 부과되는 위자료를 ‘가중된 위자료’라 지칭하기로 함.
- 6) 대법원 보도자료(2016. 10. 24), “2016년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 개최” 참조.
- 7) 고의, 중과실, 사회 통념상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한 불법행위, 영리에 따른 이익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통상적 사용용도에 비추어,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재화·용역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 및 일반인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를 가졌던 경우.
- 8) 2005~2013년 사이 일본 법원은 자전거 사고 피고에게 4~1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했음; 최창희·정인영(2015),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IV장, p. 90 참조.
- 9) 2012년 한국과 미국의 1인당 손해배상액은 각각 12,800원, 413,420원이었고 1인당 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각각 10,200원, 365,040원이었음; 최창희·정인영(2015), p. 62 참조.
- 10)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 보험은 우연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므로 가중된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보험 담보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sup>11)</sup>
- 단, 과거 금융위원회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의무보험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서 보험계약자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는 보험 판매를 허용한 사례가 있음.<sup>12)</sup>
- 또한 보험회사들은 한국에 상품을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의 보험계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영문약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수출기업들은 대부분 상품이 소비되는 지역에서 PL보험을 가입함. **kiri**

11)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음; 김동훈(2011), 『보험론』, 학현사, p. 39.

12) 금융위원회(2015), 「신용정보법」 제43조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 제공 가능성에 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신용정보법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를 보완적으로 담보하는 경우에도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fsc/index.do>) 참조.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형태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확대 보장 특별약관’으로 판매하고 있음.